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위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840

발의연월일: 2025. 4. 15.

발 의 자:김위상·서범수·김선교

임이자 • 백종헌 • 구자근

우재준 • 이인선 • 김소희

고동진 · 강대식 · 김승수

박충권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지역 내 근로자, 사용자 등경제·사회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해당 규정이 임의규정에 불과하고 지원의 구체적 기준이 부 재하여 일부 광역자치단체만 간헐적으로 사회적 대화기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,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은 사실상 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 는 실정임.

이에 해당 지원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의무조항화 하고 지방자 치단체와 공동 설치·운영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, 기구의 구성을 비정규직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자영업자, 소상공인, 청년, 여성 등까지 확대하여 진정한 의미의 지역별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20조).

법률 제 호

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 중 "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"를 "필요한 지원을 하여야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의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지역별 사회적 대화 의제 검토
- 2.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 · 연구
- 3. 지역별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보조
- 4. 회의 장소, 운영 인력 등 물적 · 인적 자원의 제공
- 5. 지역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에 대한 교육 및 자문
- 6. 지역에서 도출된 의제를 의제개발 · 조정위원회에 연계 · 상정
- 7. 그 밖에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, 공동으로 지역별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치 ·운영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지역별 사회적 대화기구의 설치 및 운영

에 있어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,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자영업자, 소상공인, 청년, 여성 등 다양한 경제·사회 주체가 사회적 대화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 방법, 절차 및 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0조(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 제20조(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 원) ① 위원회는 지역 내 근로 원) ① -----자・사용자 등 경제・사회 주 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 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 -----필요하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지원을 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필요한 지원에 관한 ② 제1항의 필요한 지원에 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지역별 사회적 대화 의제 검 토 2.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 를 위한 조사 · 연구 3. 지역별 사회적 대화 기구 설 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보조 4. 회의 장소, 운영 인력 등 물 적 · 인적 자원의 제공 5. 지역별 사회적 대화에 참여 하는 주체에 대한 교육 및 자 문 6. 지역에서 도출된 의제를 의 제개발 · 조정위원회에 연계 · 상정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- 7. 그 밖에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, 공동으로 지역별 사회적 대화기 구를 설치・운영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지역별 사회적 대화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,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자영업자, 소상공인, 청년, 여성 등 다양한 경제・사회 주체가 사회적대화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 방법, 절차 및 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